

# 2017년도 서삼면 종합감사 결과

## 1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7. 5. 23.(화) ~ 5. 26.(금), 4일간
- 감사반 : 감사담당 외 5명
- 대상기간 : 2015. 5. 22. ~ 2017. 5. 26.

## 2 감사결과

구분	행정상조치			재정상조치(건/천원)				비고
	계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계	25	6	19	12/324	4/316	8/8	-	
원처분	12	4	8	12/324	4/316	8/8	-	
현지처분	13	2	11	-	-	-	-	

※ 회수 :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인건비 중복, 산재 및 고용보험료 미정산

※ 추징 :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수료 미징수

## 3 지적사항

### 원 처 분

#### 1. 2016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인부임 지급 부적정(시정)

- 사업기간
  -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 2016. 6. 13.~6. 23.(8.5일)
  - 하천부유쓰레기 정화사업 : 2016. 6. 3.~6. 24.(6일)
- 서삼면 ◇◎리 반○○이 6.17.(8시간)과 6.23.(4시간) 근로일자 중복 관리하여 172,890원 부당 집행함

##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시책사업 등 명목없이 '업무추진 직원 노고 격려' 식대 집행 : 15건 912천원
  - 2017. 2. 관내 학교 졸업식 격려품(상품권) 구입시 지급대상 누락 : 1건 50천원
  - 2016년 설·추석맞이 상근직원 노고 격려물품 구입 : 2건 839천원
- 기타 업무추진비 등
  - 2016. 8. 벽화그리기 자원봉사자 격려 식대를 부서운영비로 집행 : 1건 123천원
  - 2016.10. 정원가산금으로 업무추진 직원 격려 간식비 집행 : 1건 45천원

## 3. 개발행위허가 위법사항에 따른 지도·감독 소홀(시정)

- 위법사항 : 기간 내 미준공에 따른 변경허가 미이행
- 위 치 : 서삼면 ☆◆리 000번지 외 6건

## 4.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소홀(주의)

-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소홀
  - 서삼면 ▲■리 000번지 : 개발행위허가 외 성토(콘크리트 h=1.2m) 물량 증가

## 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업무 소홀(시정)

- 2015 서삼면 생활민원사업외 2건 : 143,920원 회수

## 6. 2016 하천퇴적토 준설 및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주의)

- 2016 하천퇴적토준설 사업 : 예산목적외 사용

## 7. 국민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소홀(주의)

- 부적정내용 : 국민기초수급자에게 매분기 지급하는 쓰레기봉투를 수급 대상자전원에게 미지급
- 대상인원 및 내역 : 68명 / 612매 (개인별 9매)
- 미지급기간 : 2015년 4분기

## 8. 농지전용신고수리 부적정(주의)

- 농지법 시행령 36조에 의하면 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하여 농업인의 경우 1천 500평방미터 이하로만 농지전용 신고를 받아야 함에도 2017년도에 이를 확인하지 않고 농지전용신고 수리

(단위 : m<sup>2</sup>)

년도별	피허가자		토지의 표시				수리 면적	전용목적	비고
	주소	성명	리	지번	지목	지적			
2016	◇★로 000-18	한○○	▽◎	000-5	답	1911	985	벼 경화장 및 건조장	
2017	"	"	▽◎	000-5	답	1911	926	벼 경화장 및 건조장	

### 9.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수료 징수 소홀(시정)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수수료가 수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 : 8건 8,000원

접수일	수수료 미납자		수수료 미납액 (원)	비고
	주소	성명		
합계			8,000	
2015.08.28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000-0	최***	1,000	
2015.09.06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로 000-7	위**	1,000	
2015.09.10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길 00-6	최**	1,000	
2015.09.14	서울특별시 송파구 00로 00길 00-1(방이동)	이**	1,000	
2016.01.26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 000	오**	1,000	
2016.08.22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리 000-14	홍**	1,000	
2016.09.06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길 00-26	임**	1,000	
2016.09.22	광주광역시 서구 **1로 00번길 10	문**	1,000	

### 10. 공문서 작성 및 처리 부적정(주의)

○ 공문서 1인 결재내역

처리일자	기안자 (담당자)	공문제목	결재내용	비고
계		5건		
2016.8. 3	김**	관내출장신청서	1인 결재	
2017.4.18	김**	2017년도 민방위 편성자원 일체 정비 계획 통보	1인 공람	
2016.9.27	김**	전기사업 허가 신청인 신원 및 결격사유 조회	1인 공람	
2016.4.22	김**	2016년도 제18회 영양보호사 합 격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	1인 공람	
2016.3.24	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에 따른 결 격사유 조회	1인 공람	

## 11. 민방위 업무추진 소홀(주의)

- 민방위대원 편성에 따른 이장 사실확인 및 임무부여 등 통지 소홀
- 민방위 편성절차 미준수

## 12.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부적정(주의)

- 민원처리 지연 : 7건
- 결재 공문없이 완료처리 및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미통지 : 1건
- 민원 처리기간 잘못 접수 : 2건(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접수일자	처리기한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비고
계		9명			
15.11.10	15.11.12	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주말체험영농)	15.11.13	지연처리
16.02.22	16.02.22	오**	전입신고	16.02.23	
16.07.07	16.07.07	강**	주민등록표등본교부	16.07.08	
16.07.07	16.07.07	강**	주민등록표등본교부	16.07.08	
16.12.05	16.12.05	정**	주민등록증분실신고	16.12.06	
17.01.18	17.01.18	김**	전입신고	17.01.19	
16.04.11	16.04.11	***건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취소	16.04.11	
15.11.11	15.11.17	박**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주말체험영농)	15.11.16	처리기한 2→4일로 잘못접수 (지연처리)
16.03.07	16.03.09	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16.03.10	처리기간 4→2일로 잘못접수

## 현 지 처 분

### 1. 이장 활동수당 지급일 부적정(주의)

- 2015. 11.~2016. 10.까지 이장활동수당 7건을 1~4일 지연 집행함

## 2. 가설건축물 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안내 등 소홀(시정)

-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도과
  - 위     치 : 서삼면 ◎◆리 000번지 (주)○○○건설
  - 사   업   명 : 서삼천 하도●☆사업 2차
  - 용     도 : 현장사무실(경량철골조)
  - 존치기간 : 2015. 9. 16. ~ 2015. 11. 30.

## 3. 수의계약 업무 소홀(시정)

- 2015 서삼면 생활민원사업 외 2건

사업명	업체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비 고
2015년 서삼면 생활민원사업	(주)**산업	5,800	2015.12.16.	
2015년 서삼면 생활민원사업 관급자재 구입	(주)대*	3,300	2015.12.23.	관인누락
2015년 서삼면 주민숙원사업 관급자재 구입	**기계	1,005	2015.6.18.	관인누락

## 4. 공사감독, 관급자재 물품계약 및 검수업무 부적정(주의)

- 2017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문비설치)공사의 4건

사   업   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천원)	업체명	물품
2017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문비설치)공사	2017.4.13	2017.4.13 2017.5.13.	1,210	(주)*유	문비
2015 서삼면 생활민원사업 관급자재 구입(수로관)	2015.12.15	2015.12.15 2016.4.30.	3,300	(주)대*	수로관
2016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벽화그리기	2016.7.20	2016.7.20 2016.9.18.	9,163	(주)★**드	
2016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조형물	2016.7.20	2016.7.20 2016.9.18.	9,486	(주)★**드	
2016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화단가꾸기	2016.7.20	2016.7.20 2016.9.18.	1,146	(주)★**드	

## 5.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주의)

- 2015년 하반기 12건 : 미실시

## 6. 아동급식 지원사업 업무추진 소홀(주의)

- 부적정내용 : 아동급식지원은 매월 정해진 기한내에 대상자에게 지원  
해야 하나 그 기한을 초과하여 아동급식을 지원
- 지원초과기한 : 2015. 6. ~ 2017. 4.

○ 아동급식 지원사업 지연 지원현황

연도별	지원기준	지원인원	지원횟수	지연 지원횟수
합 계			24	11
2015	5일이내	11명	7	5
2016	10일이내	11명	12	4
2017	10일이내	10명	5	2

**7.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및 모니터링 추진 소홀(주의)**

- 부적정내용 : 복지대상자의 주요문제와 욕구 파악등을 위하여 연초 대상자에 대하여 개인별 계획을 수립 후 방문상담등을 하여야 하나 계획수립 한 후 방문상담 등을 미실시함
- 방문상담 등 미실시 기간 : 2015년 / 대상자 77명 중 15명 미실시
- 2015년 ~ 2017 기초수급자 방문상담 및 모니터링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복지대상자			비 고
	상담계획	상담실시	상담미실시	
계	230		15	
2015	77	62	15	
2016	79	79		
2017	74	36	38(기간미도래)	

**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구입(할인)지원업무 소홀(주의)**

- 부적정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원되는 정부양곡은 수급자의 생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수매 일반미를 시중 판매가격의 10%수준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수급자의 생활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장기입원한 자에 대하여 정부양곡을 지원하여 정부양곡 할인지원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기입원자 양곡 과다지급 내역

대 상 자		기구원	계	2015	2016	2017	비 고
주소	성 명						
계			15	3	8	4	
◇●로 000-41	이**	1	11	3	6	2	
	선**	1	4		2	2	

**9.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 지급 소홀(주의)**

○ 부적정내용

- 목욕비 및 이미용권의 지급은 매분기초 1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되 현재 거주하는 자(장기입원자 및 시설수급자 미지급)에 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2016과 2017년 1분기에 장기입원한 자에 대하여 이용권 45매를 부당 지급하였음

○ 목욕비 및 이·미용비 이용권 부당 지급 현황

(단위 : 명, 매)

대상자		계	2016년				2017년	비 고
성명	생년월일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변**	**..2.11	45	9	9	9	9	9	'15.12.28 전입

**10.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업무 추진 미흡(주의)**

- 학자금 신청시 추가자료 제출여부 (원천징수영수증 등 미첨부) 및 거주사항, 영농규모 등을 매 분기별 재확인하지 않고 지급

**11. 농지원부 일제정비 추진 미흡(주의)**

- 2015년도 농지원부 일제정비 계획 미수립
- 농지원부 미 정비 현황

(단위 : m<sup>2</sup>)

구분	합 계		소유권 변동		임 차 만 료		기 타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필지	면적
서삼면	145	151,550	26	18,916	89	110,305	30	3,558

## 12. 주민등록 업무추진 소홀(주의)

○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 소홀

- 신청기간 잘못고지 : 2건

☞ 12개월 이상 신청기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하나 1개월로 고지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부적정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동의 후 등기부등본 등 열람 후 발급

-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현황

(단위 : 건)

연도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계	20	4	12	4	

## 13. 전출 인감이송기간 미준수(주의)

○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3일 이내에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

○ 전출 인감이송기간 미준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이 송 현 황			비고
	계	3일 이내	3일 초과	
계	235	98	137	
2015년도	80	48	32	
2016년도	97	49	48	
2017년도	58	1	57	



# 2017년도 서삼면 종합감사 목록

연번	구분	제 목	행정상		재정상(건/천원)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징	기타
<b>계</b>		<b>25건</b>	<b>6</b>	<b>19</b>	<b>12/324</b>	<b>4/316</b>	<b>8/8</b>	
1	원 처 분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인부임 지급 부적정	○		1/173	1/173		
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3		개발행위허가 위법사항에 따른 지도·관리 소홀	○					
4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소홀		○				
5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업무 소홀	○		3/143	3/143		
6		하천 퇴적토 준설 및 배수로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7		국민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소홀		○				
8		농지전용 신고수리 부적정		○				
9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수료 징수 소홀	○		8/8		8/8	
10		공문서 작성 및 처리 부적정		○				
11		민방위 업무추진 소홀		○				
12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부적정		○				
1	현 지 처 분	이장활동수당 지급일 부적정		○				
2		가설건축물 신고 및 존치기간 연장안내 등 소홀	○					
3		수익계약 업무 소홀	○					
4		공사감독, 관급자재 물품계약 및 검수업무 부적정		○				
5		시설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				
6		아동급식 지원사업 업무 추진 소홀		○				
7		복지대상자 방문상담 및 모니터링 추진 소홀		○				
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정부양곡구입 지원업무 소홀		○				
9		목욕비 및 아이용비 이용권 지급 소홀		○				
10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추진 미흡		○				
11		농지원부 일체정비 추진 소홀		○				
12		주민등록 업무추진 소홀		○				
13		인감 이송기간 미준수		○				

# 처 분 지 시 서

NO. 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서삼면	2017	시 정	회 수	172,890	

## **제목 :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인부임 지급 부적정**

### **[ 위법·부당 내역 ]**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 및 『장성군재무회계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서삼면-5530(2016. 6. 9)호와 관련, 2016년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서삼면 1km 구간에 하천기성제 잡목제거 등 사업에 대해 서삼면 \*\*길 6 반\*\* 외 1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13 ~ 6. 23 까지 8.5일간 작업일지와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라 2016. 6. 29. 반\*\* 외 1명에게 1일 115,270원씩 각각 979,780원을 지급하였다.
- 또한, 2016년 하천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일용인부로 근로계약 체결된 반\*\*에 대해 2016. 6. 3. ~ 6. 24까지 6일간 근로하였던 6월분 인건비 291,840원을 지급하였다.
- 그런데도 서삼면에서는 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이 근로한 2016. 6. 17일과 6. 23일에 근로일자가 중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인건비(시설비) 1.5일분 172,890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 [ 처분지시 ]

- ① 중복 집행된 인건비 1.5일분 172,890원을 회수하시기 바라며,
-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서삼면	2017	주 의			

## **제목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 **[ 위법·부당 내역 ]**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23호)』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정자치부 예규 제9호)』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집행이 가능하고, 격려금은 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유공자와, 현업(현장)부서 근무자, 소속 상근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축의·부의금은 읍면장의 경우 소속직원을 제외하고는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서삼면에서는 【표 1】과 같이 규정과 다르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

[표 1]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연번	지급일자	예산과목	지급내역	금액 (천원)	부당사항
계	계		19 건	2,177	
1	2015. 6. 8	기관운영	◎◇◆직원 업무 추진 노고 격려	69	예산과목 부적정
2	2015. 6. 8	“	직원 사기진작 및 노고 격려	126	“
3	2015. 7. 3	“	엘로우시티 업무추진 직원 노고 격려	60	“
4	2016. 9. 5	“	업무추진 직원 노고격려	28	“
5	2016. 9. 7	“	업무추진 직원 노고격려	52	“
6	2016. 9. 9	“	추석맞이 ○◇직원 노고격려 물품구입	456	“
7	2017. 1.26	“	직원 노고 격려	160	“
8	2017. 1.26	“	설맞이 ○◇직원 노고격려 물품 구입	383	“
9	2017. 2. 8	“	관내 학교 졸업식에 따른 격려품 구입	50	지급대상 누락
10	2017. 2. 8	“	업무추진 직원 노고격려	77	예산과목 부적정
11	2017. 2. 8	“	업무추진 직원 노고격려	70	“
12	2017. 2.24	“	업무추진 직원 노고격려	50	“
13	2017. 2.24	“	업무추진 직원 노고격려	49	“
14	2017. 3.17	“	업무추진 직원 노고격려	65	“
15	2017. 4.12	“	업무추진 직원 노고격려	48	“
16	2015. 7. 4	부서운영	장성건강걷기대회 전직원 사기양양	208	적정
17	2015. 7. 7	기관운영	건강걷기대회 추진에 따른 직원 노고 격려	58	예산과목 부적정 및 ⑩회수 잦음
18	2016. 8. 1	부서운영	2016 함께가꾸기 농촌운동 자원 봉사자 격려	123	예산과목 부적정
19	2016.10.31	정원가산	업무추진 직원격려 간식 구입비 지급	45	예산과목 부적정

## **[ 처분지시 ]**

앞으로는 업무추진비 집행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3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서삼면	2017	시 정			

## **제목 : 개발행위허가 위법사항에 따른 지도·관리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 『국토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40조(벌칙) 등 관련법규정은 읍·면 위임소관에 속하는 1,000㎡ 이내 토지개발행위허가(협의)에 따른 위법행위의 지도·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개발행위허가(협의)를 득한 후 개발행위를 완료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당초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 완료가 어려울 경우 변경허가 등을 득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임업무를 관장하는 서삼면은 관계법규정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그럼에도 서삼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개발행위 위법사항에 대하여 피 허가자들에게 일부는 2016. 12. 23일에 전체에게는 2017. 4. 20. 공문서를 발송한 후 지도·단속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은 개발행위 위법사항**

허가(협의)일	위 치	허가 면적	목 적	개발행위 기 간	위법사항	비고
2016.1.12.	서삼면 **리 000	955㎡	단독주택 신축부지 조성	2016.1~ 2017.1.31	기간내 미준공에 따른 변경허가 미이행	
2016.1.18.	서삼면 **리 000-2	531㎡	농가주택 신축부지 조성	2016.1~ 2016.12.31	상동	
2016.3.29	서삼면 **리 000	295㎡	단독주택 신축부지 조성	2016.2~ 2017.3	상동	
2016.3.30	서삼면 **리 000	304㎡	상동	2016.2~ 2017.2	상동	
2016.3.30	서삼면 **리 000	351㎡	상동	2016.2~ 2017.2	상동	
2016.3.30	서삼면 **리 000	352㎡	상동	2016.2~ 2017.2	상동	
2016.3.30	서삼면 **리 000	615㎡	상동	2016.2~ 2017.2	상동	

**[ 처분지시 ]**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처분 및 조치를 하시기 바라며
-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4			재 정 상 조 치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신문상조치
서삼면	2017	주 의			훈 계

## 제목 : 개발행위허가 준공검사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허가) 및 『장성군 사무의 위임조례』 별표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서삼면에서는 위임 소관에 속하는 1,000㎡ 이내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및 위법행위의 지도·단속 및 조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철저를 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서삼면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건에 대하여 당초 개발행위허가 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서삼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서삼면 ◇▼리 000번지 기○○의 경우 농업용 창고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에 당초 허가내용에 없던 약 h=1.2m의 콘크리트 바닥 660㎡를 무단 조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허가 없이 준공검사를 승인 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개발행위 변경허가 없이 준공검사 승인처리 현황

허가일 (변경허가일)	위 치	허가면적	목 적	준공일	불법행위 내용	비 고
2015.8.28. (2016.2.24.)	서삼면 ◎◇리 000	660㎡	농업창고 부지조성	2016.8.12.	h=1.2m 성토행위 (콘크리트 포장)	

## **[ 처분지시 ]**

앞으로는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시 관련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업무 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5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서삼면	2017	시 정	회 수	143,920	

## **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업무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 서삼면에서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2015 서삼면 생활민원사업』 외 2건에 대하여 각각 2015. 12. 16.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건설공사 경비분석 및 비목별 요율을 정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공사의 예정가격을 결정 할 때에는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 이에 산재보험료 및 고용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방법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범위) 규정에 따라 면허가 필요한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나, 동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사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건설현장의 재해예방 차원에서 자의적으로 납부 할 수 있다.
  
- 그러나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일로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날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한편, 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료는 사후 정산대상에서 제외됨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면 잔액부분은 회수할 수 없으나 보험가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산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 그런데도 서삼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준공일 이후 보험가입, 사업 개시 신고서 및 별도 정산 조치하지 않은 등 계약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 현황

사업명	계약 일자	계약 금액 (천원)	계약자	산정내역(원)			준공계 접수일	보험 가입 신고일
				산정액	납부액	정산 여부		
2015 서삼면 생활민원사업	2015. 12.16	5,800	(주)**산업	66,149	-	부	2016.4.20	-
2015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서**)	2015. 5.29.	2,910	(주)새****징	40,963	-	부	2015.6.16	-
2016 무의탁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	-	3,000	(주)새****징	36,808	-	부	2016.7.24	2016. 7.28.

### [ 처분지시 ]

- ① 2015 서삼면 생활민원사업 외 2건에 대해 산재 및 고용보험료 미정산분 143,920원을 회수하기 바라며,
- ② 앞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정산업무 추진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6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서삼면	2017	주 의			

## **제목 : 하천퇴적토 준설 및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부적정**

### **[ 위법·부당 내역 ]**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무원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및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도 서삼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6년 5월경(날짜 미상) \*\*건설중기 대표 김○○와 “2016년 하천퇴적토 준설 및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하여 굴삭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016. 5. 12.(목), 5. 13.(금), 5. 16.(월)까지 작업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첫째 날인 5. 12.(목)에만 “하천퇴적토 준설작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2일은 “도로정비 등” 예산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다.

### **【표 1】 하천퇴적토 준설 및 배수로 정비사업 예산 목적외사용 현황**

사업명	업체명	계약금액	계약일자	비 고
2016 하천퇴적토 준설 및 배수로 정비사업	**건설중기	1,485천원	미정	

## **[ 처분지시 ]**

앞으로는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하기 바라며, 업무 추진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7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서삼면	2017	주 의			훈 계

## **제목 : 국민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급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 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8조에 따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한 수급자중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의한 1종 수급자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1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지급하고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이에 쓰레기봉투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수급자에게 쓰레기 봉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현황 및 대상자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여 공급기준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서삼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5년 4분기 국민기초수급자 68명 전원에게 612매(20리터, 1인당 9매)의 쓰레기봉투를 지급하지 않아 쓰레기봉투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1】 수급자 쓰레기봉투 미지급 현황**

연번	행정리	미지급 내역		비 고
		인원(명)	매(20리터)	
계	14개리	68	612	배부기준:1인당월60리터3개월분
1	장산1리	4	36	
2	장산2리	7	63	
3	송현1리	2	18	
4	송현2리	2	18	
5	송현3리	27	243	
6	모암1리	3	27	
7	모암2리	2	18	
8	대덕2리	4	36	
9	추암1리	2	18	
10	추암2리	3	27	
11	금계1리	1	9	
12	금계2리	2	18	
13	용흥1리	2	18	
14	용흥2리	7	63	

**[ 처분지시 ]**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8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문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서삼면	2017	주 의			주 의

## **제목 : 농지전용 신고수리 부적정**

### **[ 위법·부당 내역 ]**

- 서삼면에서는 농업인이 주택이나 축사 등 농업용 시설 및 농수산물유통·가공시설,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다 간편한 절차로 농지를 전용토록 함으로써 농가의 소득과 생활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농지전용 신고수리를 하고 있다.
- 『농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농업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에 대하여 세대당 1천 500제곱미터 이하로 농지전용신고 대상 시설의 범위 및 규모가 규정되어 있고, 『농지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농지전용 신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신고내용이 『농지법』 제35조 및 이 영 제33조제1항제5호·제6호 및 제36조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전용 신고증을 신고인에 내주어야 하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출받은 서류를 반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서삼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6년도에 서삼면 ◎◆로 000-00 한\*\*이 서삼면 \*\*리 140-5번지 답, 1,911㎡ 중 985㎡를 벼 경화장 및 건조장으로 농지전용 신고 수리한 사실이 있는데도, 2017년도에도 한\*\*이 농지전용 신고한 벼 경화장 및 건조장시설에 대하여 적합(농지전용신고일 이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하여 농업인의 경우 1천 500평방미터 이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농지전용신고 수리한 사실이 있다.

【표 1】 농지전용 신고수리 현황

년도	피허가자		토지의 표시				수리면적 (㎡)	전용목적	비고
	주소	성명	리	지번	지목	지적 (㎡)			
2016	**로 000-18	한**	**	000-5	답	1,911	985	벼 경화장 및 건조장	
2017	“	“	**	000-5	답	1,911	926	벼 경화장 및 건조장	

### [ 처분지시 ]

앞으로는 농지전용 신고 수리시 적합여부를 철저를 확인하기 바라며,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9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서삼면	2017	시 정	추 징	8,000	

## 제목 :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수료 징수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 서삼면에서는 발급하는 각종 서류에 대한 수수료로 일정액을 받고 서류에 확인용으로 붙이는 증서(표)인 장성군의 수입증지로 납부하도록 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 『농지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시 1천원의 수수료로 수입증지를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서삼면에서는 【표1】 과 같이 광주 광산구 ○◆동 000-1번지 최\*\*\* 등 8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수수료가 수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접수한 사실이 있다.

### 【표1】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수료 미납현황

접수일	수수료 미납자		수수료 미납액	비고
	주 소	성 명		
<b>합 계</b>			<b>8,000원</b>	
2015.08.28	광주광역시 광산구 **동 000-1	최***	1,000원	
2015.09.06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로 000-7	위**	1,000원	
2015.09.10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길 00-6	최**	1,000원	
2015.09.14	서울특별시 송파구 00로 00길 00-1	이**	1,000원	
2016.01.26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 000	오**	1,000원	
2016.08.22	전라남도 장성군 서삼면 **리 000-14	홍**	1,000원	
2016.09.06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길 00-26	임**	1,000원	
2016.09.22	광주광역시 서구 **1로 00번길 10	문**	1,000원	

## [ 처분지시 ]

- ① 농지취득자격증명 수수료 미징수분 8명, 8,000원을 추징하기 바라며,
- ② 앞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접수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업무연찬 등을 통해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10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문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서삼면	2017	주 의			주 의

## 제목 : 공문서 작성 및 처리 부적정

### [ 위법·부당 내역 ]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고,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접수한 문서를 처리담당자는 공람할 자의 범위를 정하여 그 문서를 공람하게 할 수 있으며, 공람을 하는 결재권자는 문서의 처리기한과 처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해 읍면의 전결대상사무는 『장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4조에 따라 별표 7과 별표 12에 따라 전결 처리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서삼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6. 3월부터 2017. 5월 감사일 현재까지 관내출장신청서를 결재권자인 면장 결재를 득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담당 1일 결재를 하였으며, 2017년도 민방위 편성자원 일제정비 계획 통보 외 3건에 대해 결재권자의 공람없이 1인 결재하여 공문서 작성 및 처리를 부적정하게 한 사실이 있다.

**【표1】 공문서 1인 결재 내역**

처리일자	기안자 (담당자)	공문제목	결재내용	비고
계		5건		
2016.8. 3	김**	관내출장신청서	1인 결재	
2017.4.18	김**	2017년도 민방위 편성자원 일제 정비 계획 통보	1인 공람	
2016.9.27	김**	전기사업 허가 신청인 신원 및 결격사유 조회	1인 공람	
2016.4.22	김**	2016년도 제18회 요양보호사 합 격자 결격사유 조회 의뢰	1인 공람	
2016.3.24	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에 따른 결 격사유 조회	1인 공람	

**[ 처분지시 ]**

- ① 공문서는 반드시 장성군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 및 공람을 득하여 처리하기 바라며,
-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11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서삼면	2017	주 의			

## **제목 : 민방위 업무추진 소홀**

### **[ 위법·부당 내역 ]**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편성절차 등)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민방위대에 새로 편입되는 자에 대하여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발생하는 해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편입조치를 마쳐야 하며, 전입자·퇴직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나 직장 민방위 대장의 신고가 있는 때에 즉시 민방위대에 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6조제4항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지역 민방위 대원중에서 민방위 대원의 의무가 해제되는 자는 삭제하고, 새로 편입한 자는 추가한 민방위대원 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10일까지 해당 통·리 민방위대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2015~2017년도 민방위대 편성지침에 따르면 편성대상자 사실확인을 통·리장을 통하여 관내 거주사실 여부, 직업·자격·기술, 직장 민방위대 편성 여부, 편성 제외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고 통·리장은 확인된 편성대상자 명부를 면장에게 제출하여 편성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 그런데도 서삼면에서는 2015~2017년도 편성대상자에 대한 마을이장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표 1】** 과 같이 편성대상자를 확정

하였으며, 민방위대원 명부를 당해연도 1월 10일까지 통·리 민방위대  
 장에게 송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편성된 민방위대원에게 소속 임무  
 등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1】 민방위 대원 편성 현황(2015~2017년)**

(단위 : 명)

연 도 별	대수	대원명부	신규편성	제외	비고
계	9	249	30	29	
2015년도	3	88	17	13	
2016년도	3	84	12	16	
2017년도	3	77	1	-	

**[ 처분지시 ]**

앞으로는 민방위업무 추진시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  
 기 바랍니다.



# 처 분 지 시 서

NO. 12					
소 관	시행년도	행정상조치	재 정 상 조 치		신분상조치
			방 법	금 액(원)	
서삼면	2017	주 의			주 의

## **제목 :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부적정**

### **[ 위법·부당 내역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제27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을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공정·친절하게 처리하고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여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고, 결재를 받은 문서 가운데 발신하여야 하는 문서는 시행문으로 작성하여 발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서삼면에서는 【표 1】 과 같이 2015. 5. 22일부터 2017년 5월 감사일 현재까지 7건에 대하여 민원 처리기한을 도과하여 처리하였으며, 접수한 민원에 대해 취하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완료처리하고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나 취하 신청서만 접수하고 완료 처리하였다.
  
-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접수시 취득목적이 주말체험영농인 경우 처리기한이 2일이나 처리기한을 4일로 접수하여 업무담당자가 하루 늦게 처리하였으며, 농업인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4일로 접수하여야 하나 2일로 잘못 접수한 사실이 있다.

**【표1】 민원 지연처리 및 잘못 접수현황**

접수일자	처리기한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일자	비고
계		9명			
15.11.10	15.11.12	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주말체험영농)	15.11.13	지연처리
16.02.22	16.02.22	오**	전입신고	16.02.23	
16.07.07	16.07.07	강**	주민등록표등본교부	16.07.08	
16.07.07	16.07.07	강**	주민등록표등본교부	16.07.08	
16.12.05	16.12.05	정**	주민등록증분실신고	16.12.06	
17.01.18	17.01.18	김**	전입신고	17.01.19	
16.04.11	16.04.11	***건설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취소	16.04.11	결재공문 없이 처리
15.11.11	15.11.17	박**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주말체험영농)	15.11.16	처리기한 2→4일로 잘못접수 (지연처리)
16.03.07	16.03.09	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	16.03.10	처리기간 4→2일로 잘못접수

**[ 처분지시 ]**

- ① 민원이 접수된 경우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공정하게 결재를 득한 후 처리기간 내에 완료 처리하기 바라며,
- ② 앞으로는 업무연찬 등을 통해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